

#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

## - 기관 정관 -

### ▶ 기관 정관(규정)

####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EMA학회 (이하 "본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The Journal of KEMA (Kinetic Ergocise based on Movement Analysi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학회는 운동분석 기반 근골격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에 있어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사업
2. 근골격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국내외 세미나 사업
3.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사용하는 근골격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
4. 근골격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 관련 기관 및 학회와 공동 시범사업 수행 및 연구 활동
5. 국내외 근골격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 관련 학문교류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원

제5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 근골격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에 관심이 있고, 관련 전공분야의 전문학사 또는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관련분야 종사자
2. 일반회원 : 근골격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전공분야의 학생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제7조 (입회절차) 본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개강좌를 신청하고, 이수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학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본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 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학회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나눈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명
3. 이사 30명 이내
4.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자격) 임원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1.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학회의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2.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 분장,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재무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임명직 이사의 해임) 임명직 이사가 다음 각 1에 해당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 처분되었을 경우
2.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임명직 이사, 감사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 14조 규정에 의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 제 4장 총회

제15조 (구성 및 의결 정족수)

1.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3. 정기 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해산
2. 정관 변경
3. 회장단, 감사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주요 사업계획 승인
6.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 제 5장 이사회

### 제17조 (구성 및 의결 정족수)

1.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①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
  - ② 재적이사 1/3 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이사회 소집은 회의개최 1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칙 및 제 규정의 재정 및 개폐
3.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 사항

## 제 6장 편집위원회

### 제20조 (구성)

1.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본 학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제21조 (자격)

1.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22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1년에 2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2.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4.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로부터 논문 원고를 접수 받아 투고규정에 의해 심사 절차를 밟는다.
6. 논문은 분야별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검토과정을 밟는다
7.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는 매 학회지 발행 전 1회 이상 소집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강좌 교육비
2. 기타 수입
3.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자산관리 및 예산집행)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 제 8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및 직원)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아르바이트 학생)을 둘 수 있다.

## 제 9장 보칙

제 1조 (학회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 2조 (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 3조 (서면결의) 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 4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